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6재다149 소유권말소등기
원고(재심원고) A
피고(재심피고) B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재다647 판결
판 결 선 고 2016. 4. 12.

주 문

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을 다시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박상옥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이상훈
--	-----	-----

주 심	대법관	김창석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조희대
--	-----	-----